

의안 번호	2614	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수수료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8. 2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8. 2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9. 4.(금)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「관광진흥법」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: 검토 내용 참고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가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- 나.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제2조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, 제156조
- 라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
- 마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9조
- 바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
- 사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

5. 종합 검토 내용

□ 개정 이유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「관광진흥법」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안 제7조제2항)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
 - 내용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 다만,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」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.
- (안 별표1) 유원시설업 명칭 정비
 - 현행) 유원시설업 → 개정) 테마파크업
- (안 별표4)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수수료 인하
 - 현행)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→개정) 1GB마다 800원

□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 등·초본 등 45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증명 간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(*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제외),
- 울산 내 타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전면 시행에 따른 형평성 확보 및 중구 구민의 비대면 민원 편의 제고 및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주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하며,

- 수수료 면제에 따른 구민 부담완화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유도를 통한 통합민원 창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근거법규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- 제28조(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)**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(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·고시한다.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

- 제2조(등기사항증명서)**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,200원으로 하고,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한다.

지방자치법

- 제154조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관광진흥법
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6. 테마파크업 :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(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[개정전 조문]

6.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 : 유기사설(遊技施設)이나 유기기구(遊技機具)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(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

제69조(수수료) ② 법 제79조제3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·변경허가·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조(비용부담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구분하며,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.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7조(수수료의 금액)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 표] <개정 2021. 6. 23.>

수 수 료 (제7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○ 열람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필름 · 테이프 등 마이크로 필름 · 슬라이드 등	○ 영화필름의 시청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- 1컷마다 200원	○ 사진필름의 복제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 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	○ 전자파일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의 열람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 · 비디오자료)의 시청 · 청취 - 1편: 1,500원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	○ 사본(종이출력물)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의 복제 - 무료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 · 도면 · 사진 등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
전자파일		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GB마다 8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------	--	--

< 비고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